

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3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3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료(사용료)를 한시적으로 감면(할인)하고자 조례 일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10% 감면(할인) 규정 마련

- 201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적용 및 중복감면 제한 규정
-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
연번	자치법규 명	개정 내용	비고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연회비의 100분의 10 감액 -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	조례안 제1조

2	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100분의 10 할인	조례안 제2조
3	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, 수강료의 100분의 10 감액	조례안 제3조
4	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액 -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	조례안 제4조
5	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0분의 10 감액 -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	조례안 제5조
6	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이용료의 100분의 10감액	조례안 제6조
7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10 감액	조례안 제7조
8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할인	조례안 제8조
9	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	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개인사용료,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 감액 -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 적용	조례안 제9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련 부서 협의 완료 (가정복지과, 마포중앙도서관, 자치행정과, 총무과, 교육청소년과, 교통지도과, 문화진흥과, 생활체육과)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2. 22. ~ 3. 14. (제출의견 없음)

2)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제외법령 (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종료)
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 3. 19.)
- 5)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6)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
- 7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회비를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별표의 시

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센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

받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개인사용료,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
⑥ 제1항 및 제2항, 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)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)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)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)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7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)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)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13조의3제1항제12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)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연회비 징수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⑤·⑥ (생략) <u><부칙></u></p>	<p>제9조(연회비 징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회비를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</p> <p>⑦·⑧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

3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 등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⑥·⑦ (생략) <u><부칙></u></p>	<p>제10조(사용료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⑦·⑧ (종전 ⑥·⑦과 같음) 제2조(유효기간) 제10조제6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

4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부칙></p>	<p>제9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3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

5.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사용료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<단서 신설>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 <p><부칙></p>	<p>제7조(사용료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. 다만,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 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</u>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7조제3항제7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

6.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이용료 등의 징수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부칙></u></p>	<p>제9조(이용료 등의 징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센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 업무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

7.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부칙></u></p>	<p>제2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2조제4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

8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의3(할인)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,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부칙></p>	<p>제13조의3(할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</u> 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. 다만,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13조의3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

9.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부 칙></u></p>	<p>제11조(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개인사용료,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⑥ 제1항 및 제2항, 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,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

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한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, 이용료 등을 경감하는 조문을 일괄개정의 방식으로 신설함에 따라 시설별 할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시설별 할인에 따른 손실액을 추계(서울특별시 추계기준 반영)한 결과,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함. (※시설별 할인 손실액 추계현황 참조)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김유아
연 락 처	02-3153-8573